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649

발의연월일: 2025. 1. 20.

발 의 자: 강경숙・김준형・김문수

김준혁 • 박은정 • 백승아

황운하 • 문정복 • 정을호

서왕진 • 신장식 • 김선민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해임과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두며,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3명,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5명으로 구성됨.

그런데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 수에 비해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많음에 따라 교육적 고려보다는 법적으로 치우친 심의를 할 우려가 있음.

이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도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 수와 동일하게 3명으로 구성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제1항제3호).

법률 제 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제1항제3호 중 "5명"을 "3명"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 및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은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4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 제24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
| ① 조정위원회는 대통령이 위 | ① |
| 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 |
|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 |
|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호선한 | |
| 다. | |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3.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 | 3 <u>3</u> |
| <u>명</u> | <u>명</u> |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